


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

2026년 2월 10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국 토 교 통 부 장 김 윤 덕

● 법률 제21339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·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.

제49조의13의 제목 중 “요금”을 “요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(이하 “가맹수수료”라 한다)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
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6.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수수료의 수취·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